

<p>나.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<u>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고객</u></p> <p>(주 1)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(생략, 변경전 약관 참조)</p> <p>2. 서비스내용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) 가. 전자금융(주2) 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</p> <p>(주2)인터넷뱅킹,텔레뱅킹, 모바일뱅킹,스마트폰뱅킹 등</p> <p>나. <u>외환은행 CD/ATM을 이용한 외환은행 계좌의</u> 마감후 출금수수료 면제</p> <p>다. <u>다른은행 CD/ATM을 이용한 외환은행 계좌의</u> <u>출금수수료 면제</u> (단, 은행 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)</p> <p>3. 제공방법 : 생략</p> <p>③ 우대서비스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제공조건(가 또는 나 충족) 가. 이 통장의 월 50만원이상 급여이체실적(주1)이 있는 고객 나.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<u>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10만원이상인 고객</u></p> <p>2. 서비스내용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) - 우대서비스1에서 제공되는 수수료 면제 - <u>외환은행 CD/ATM을 이용한 외환은행</u> 계좌의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</p> <p>3. 제공방법 : 전월 또는 전전월에 '제공조건 가'를 충족하거나 전월에 '제공조건 나'를 충족하는경우 당월에 '우대서비스2'를 제공합니다.</p> <p>제9조 ~ 제10조 (생략)</p>	<p>이체 실적(주1)이 있는고객</p> <p>나.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<u>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고객</u></p> <p>(주 1) 급여인정기준 (생략, 변경후 약관 참조)</p> <p>2. 서비스내용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) 가.전자금융(주2) 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</p> <p>(주2)인터넷뱅킹,텔레뱅킹, 모바일뱅킹,스마트폰뱅킹 등</p> <p>나.<u>KEB하나은행 CD/ATM을 이용한 KEB하나은행</u> 계좌의 마감후 출금수수료 면제</p> <p>다. <u>다른은행 CD/ATM을 이용한 외환은행</u> <u>계좌의 출금수수료 면제 (월 10회)</u> (단, 은행 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)</p> <p>3. 제공방법 : 좌동</p> <p>③ 우대서비스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제공조건(가 또는 나 충족) 가 이 통장의 월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이체 실적(주1)이 있는 고객 나.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<u>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10만원이상인 고객</u></p> <p>2. 서비스내용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) - 우대서비스1에서 제공되는 수수료 면제 - <u>KEB하나은행 CD/ATM을 이용한 KEB하나은행</u> 계좌의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</p> <p>3. 제공방법 : 전월 또는 전전월에 '제공조건 가'를 충족하거나 전월에 '제공조건 나'를 충족하는경우 당월에 '우대서비스2'를 제공합니다.</p> <p>제9조 ~ 제10조 (좌동)</p>	<p>카드사용실적 ->결제실적</p> <p>급여인정기준 변경</p> <p>행명 변경</p> <p>타행CD기 출금수수료 면제횟수 제한</p> <p>카드사용실적 -> 결제실적</p> <p>행명 변경</p>
---	---	--

「넘버엔(NoN) 통장 특약」(구 외환은행)

제1조 적용범위

넘버엔(NoN)통장(구 외환은행) (이하 '이 통장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 (개인사업자 불가)

제4조 가입제한

이 통장의 가입은 1인당 1계좌에 한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통장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제6조 가입기간

이 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제7조 이자

① 이 통장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 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.

1. 이자계산기준일 : 매년 3, 6, 9, 12월 제3금요일

2. 원가일 :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

② 이 통장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

1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미만

2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이상

제8조 우대서비스의 제공

①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우대서비스 1,2 별 제공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② 우대서비스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제공조건(가 또는 나 충족)

가. 이 통장으로 월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이체실적^(주1)이 있는고객

나.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고객

(주1) 급여인정기준	
인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원화계정)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된 경우 (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) - 급여일 ± 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 (급여일 사전 등록) ● 최소 건당 50만원 (단, 협약에 따른 군.전의경 급여는 금액 기준없이 인정)
제외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, 다음의 경우 제외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 (단, 창구거래중 급여 다건입금은 인정) -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(단, 타인에 대한 '이체'거래는 인정) ● 가맹점대금, 대출연동,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 ● 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제외 (예시: 예금주명 적요)

2. 서비스내용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)

가. 전자금융(주2) 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

(주2)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모바일뱅킹,스마트폰뱅킹 등

나. KEB하나은행 CD/ATM을 이용한 KEB하나은행 계좌의 마감후 출금수수료 면제

다. 다른은행 CD/ATM을 이용한 KEB하나은행 계좌의 출금수수료 면제 (월10회)

(단, 은행 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)

3. 제공방법 :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공조건 가를 충족하거나 전월에 제공조건 나를 충족하는 경우 당월에 '우대서비스1'를 제공합니다.

③ 우대서비스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제공조건(가 또는 나 충족)

가. 이 통장으로 월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이체실적(주1)이 있는 고객

나.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실적이 10만원이상인 고객

2. 서비스내용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)

- 우대서비스1에서 제공되는 수수료 면제

- KEB하나은행 CD/ATM을 이용한 KEB하나은행 계좌의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

3. 제공방법 : 전월 또는 전전월에 '제공조건 가'를 충족하거나 전월에 '제공조건 나'를 충족하는 경우 당월에 '우대서비스2'를 제공합니다.

④ 우대서비스 특례 : 최초 예금 가입 후 다음달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'우대서비스1' 및 '우대서비스2'를 제공합니다.

제 9 조 부가혜택

이 통장 보유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 우대서비스 1,2를 제공합니다.

1. 제공대상 : 출산휴가/육아휴직 및 인병휴직 또는 퇴사한 경우 사유발생월 포함 6개월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한 고객

(제출서류(예시): 출산휴가/육아휴직 및 인병휴직확인서,경력증명서 등 확인가능 서류)

2. 제공조건: 사유 발생월 전월기준으로 과거 3개월이내 2개월이상 급여이체실적(주1)이 (월 건당 50만원이상) 있는 경우

3. 서비스기간: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는 달까지 제공

제 10 조 사정변경

- ① 본 특약의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은행이 본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은행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·안내합니다.
-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1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게시·안내합니다.
 - 1. 제1항에 의한 게시
 - 2.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
 - 3.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에 의한 통지
 - 4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
 - 5. 거래통장에 표기
 - 6.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
-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거래처가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부칙 (제정)

이 특약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)

이 특약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)

이 특약은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3)

이 특약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4)

이 특약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5)

이 특약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(경과조치) 이 특약 변경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.

부칙 (6)

이 특약은 2015년 8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부칙 (7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